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50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이해민 · 민병덕 · 김준형

김재원・김 현・서왕진

김선민 • 이정헌 • 차규근

백선희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음.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종사자 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통령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

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 여부를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항, 안제17조제3항제6호 신설).
-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46조제2항).
-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함(안 제46조제3항).
- 라. 이사회는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사장후

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바.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 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를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준수하여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46조제2항 중 "11人으로 구성한다"를 "13명으로 구성하고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임자를 추천한 주체가 추천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제1항제7호 중 "社長·監事의 任命提請"을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으로, "副社長 任命同意"를 "부사장의 임명동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 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를 "감사 임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사 및 감사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하며, 같 은 조 제4호 중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감사 임면"으로 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4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			
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u>放</u>	ਸ੍ਰੇ		
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		
公表하여야 한다.	<u>고 준수하여야</u> .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	③		
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			
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			
야 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		
	규약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u>6.</u> (생 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 등) ① (생 략)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이사 <u>11人으로 구성한다</u>.
-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단서 신설>

- ④ ~ ⑥ (생 략)
- ⑦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단서 신설>
- (8·9) (생 략)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 등) ① (현행과 같음)
- -----13명으로 구성하고 국회 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면 한다.
- ③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 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 천한다. 다만, 보궐이사의 경우 전임자를 추천한 주체가 추천 한다.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다만, 제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8·9 (현행과 같음)

議決한다.

- 1. ~ 6. (생략)
- 7. <u>社長・監事의 任命提請</u> 및 副社長 任命同意

<신 설>

8. ~ 15. (생략)

② (생 략)

第50條(執行機關) ① ~ ⑥ (생략)

<신 설>

- 1. ~ 6. (현행과 같음)
- 7. <u>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u> <u>사의 해임제청</u>----<u>부사장의</u> 임명동의
-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국 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 8. ~ 1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第50條(執行機關)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 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 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 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5.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신 설>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50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
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
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
한 국민위원회(이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이사회는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④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3명 이하의 복수 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⑤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3명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으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임명제청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 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사장후보국민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 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이사회가 정한다.